

동아쏘시오그룹 행동강령(Ver.2)

2025년 03월 20일

[제정 및 개정 이력]

No.	버전	작성일	제/개정 내용	작성자	검토자
01	1	2020.03.27	- 동아쏘시오그룹 행동강령(ver.1) 제정	고경하	박용상
02	2	2025.03.20	- 동아쏘시오그룹 행동강령(ver.2) 개정	김경민	신지원

동아쏘시오그룹 행동강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은 동아쏘시오그룹의 사회책임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각 항목별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은 긍지와 자부심,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룹과 소속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개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아니한다.
- ② 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은 공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법규와 사규를 준수한다.
- ③ 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은 그룹과 소속회사의 정보를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
- ④ 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은 건전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성희롱 예방 등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은 상호존중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 ⑥ 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은 지연 혈연 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안된다.
- ⑦ 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은 그룹과 소속 회사의 자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그룹과 소속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안된다.

제2장 인권경영

제3조(차별금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임직원의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가족현황,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모집, 채용, 승진, 교육, 임금, 복리후생 등의 고용과 관련해 차별하지 않으며,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한다.

제4조(근로조건 준수)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의 법령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최저 임금을 보장한다. 또한, 모든 임직원의 역량 개발을 위해 충분한 교육기회와 직무수행에 적절한 업무환경을 제공한다.

제5조(인도적 대우)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으로 강압, 학대, 불합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6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본 인권헌장이 적용되는 국가의 노동관계법을 존중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한다.

제7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모든 임직원에게 대해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행위를 하거나, 신분증 또는 사증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또한, 아동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연소자에 대해서는 근로로 인하여 교육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제8조(안전 및 보건) 모든 임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시설, 장비, 도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신체적 · 정신적 위험 예방 목적의 적절한 조치와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제9조(구성원 건강증진)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모든 구성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구성원의 건강을 위해 건강검진, 근골격계 질환 예방 프로그램 등 건강증진 활동을 시행한다.

제10조(안전한 일터 확보) 구성원의 건강, 안전, 보안을 강화하며,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 규정)을 준수하며 근무 장소의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한다.

제11조(지역주민 인권 보호) 사업 또는 경영활동으로 인해 지역 주민의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지역주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 거주 자유를 보호한다.

제3장 환경경영

제12조(환경보호) 환경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보전하여야 할 소중한 자산을 인식하고 환경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제13조(지속가능한 발전) 경영의사결정 과정에서 인류사회가 직면한 환경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는 책임을 다한다.

제14조(환경경영 및 규정준수) 법정 필수 환경 인허가를 취득 유지하고 보고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최신 법규 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제15조(수자원 관리) 지속가능한 물 환경 보전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저감 및 재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장 내 수자원의 효율적 사용, 재활용률 향상, 배출량 절감 등을 위해 노력한다.

제16조(온실가스 관리) 온실가스 배출 등 경영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책임을 인식하고 환경에 관한 위험을 절감 및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17조(유해물질 관리) 유해물질의 안전한 저장, 운반, 사용 및 폐기를 위해 유출방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유해 폐기물은 법규에 따라 처리 후 배출하여야 하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제18조(폐기물관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 및 효율적 처리를 위한 폐기물 보관, 운반, 처리 등에 관한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제19조(생물다양성) 자연 생태계의 복원과 생물 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태계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제20조(환경정보 공개) 전 임직원 대상 환경교육 및 환경보전 의식 향상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정보는 그룹의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제21조(친환경 공급망) 그룹 공급망 관리 행동강령에 따라 공급업체, 계약업체, 기타 주요 사업 파트너 등 협력업체에 대한 ESG 책임 준수 요건을 정의하고 친환경 공급망을 운영한다.

제4장 준법경영

제22조(뇌물,알선,청탁 등 금지)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금전, 비금전적 어떠한 형태의 불법적, 비윤리적 이익이나 뇌물을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수하거나 청탁, 제공 또는 제공의 약속을 하지 않는다.

제22조의2(뇌물,알선,청탁 등의 신고 및 처리) 다른 임직원이나 외부인으로부터 뇌물 알선 청탁 등의 행위를 요청받은 임직원은 동아쏘시오그룹 제보시스템을 통해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위 제보시스템을 통해 신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팀에서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자금세탁) 고객, 파트너, 협력업체, 기타 기관 및 개인의 자금세탁과 관련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24조(조세)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사무처리를 위해 사업장이 위치한 각 국의 세법을 준수하고, 주어진 정당한 납세의무를 회피하지 않는다.

제25조(정보공개) 국가 요청에 따른 재무적, 비재무적 정보는 관련 법규와 규정에 따라 적시에 공개한다.

제26조(독점금지) 각 국가별 독점금지법, 공정경쟁법 등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는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격 고정, 입찰 담합, 시장의 분배 및 분할,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구속 조건부 거래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한다.

제27조(금품수수금지) 부당하고 불공정한 이익의 향유를 목적으로 이해관계자와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여서는 안된다.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금품, 향응 또는 기타 개인적인 편의 등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된다.

제28조(지적재산권 보호) 모든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협력기업과 기술 및 노하우 이전 시 해당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제29조(법적 및 윤리준수) 윤리경영을 통해 투자자에게 신뢰를 주고, 공정한 사업 환경을 유지해야한다.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30조(주주 권리 존중) 투자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

제5장 소비자중심경영

제31조(고객 안전) 연구개발, 원자재 조달, 생산, 판매 및 유통, 판매 후 서비스 전 과정에서 고객의 안전과 타협하는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

제32조(품질관리) 고객에게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품질 기준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33조(완전한 정보제공)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여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우며, 허위 및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제34조(개인정보 보호)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6장 CSR

제35조(국가와 지역사회발전 기여)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사회적 부를 창조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임직원의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 문화적 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36조(사회공헌) 사회, 나아가 인류가 당면한 사회적 문제를 적극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제37조(이해관계자 참여) 회사 경영에 영향을 받거나,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파악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중요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행동한다.

제38조(기부 및 후원) 자선적인 기부 및 후원은 내부 집행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하며, 정치적 목적의 기부 및 후원을 금지한다.

제39조(공유가치 창출)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지역사회 현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사회의 복지 수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제7장 경영 시스템

제40조(조직 책임자의 책무) 소속 임직원 및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본 행동강령을 바르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41조(조직 및 보고) 윤리적 리스크 예방 및 실사를 위한 적절한 조직 및 보고체계를 구성하고,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42조(모니터링 및 실사) 윤리적 리스크를 상시 모니터링 하고, 실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43조(내부통제) 내외부 접근이 상시 가능한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정기 또는 비정기 감사 등의 적절한 내부통제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제44조(내부 고발자 보호) 내부 고발자의 신변을 보호하며, 내부 고발자가 불합리한 대우나 차별,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제45조(위반 정보공개) 위반사항 재발 방지를 위해 적절한 방식을 선택해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46조(교육) 소속 임직원이 본 행동강령이 추구하는 의미를 존중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임직원이 접근가능한 곳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7조(개정) 본 행동강령은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개정해야 한다.

정도경영 실천 서약서

본인은 회사업무 수행 시 다음과 같은 실천항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회사의 정도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고 실천하기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둘. 나는 성별, 인종, 종교, 장애, 학력, 정치적 견해, 출신지역 등에 따라 차별하지 않으며,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을 하지 않고, 인권을 존중하겠습니다.

셋. 나는 직위, 비밀 등을 이용하여 대내외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향응 수수, 부정청탁 및 압력 행사, 이권개입, 알선 등을 약속하거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넷. 나는 회사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대한 기준을 지키고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칙과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다섯. 나는 회사가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여섯. 나는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회사의 규정과 제반 법규를 준수하며, 이를 위반 시 회사가 요청하는 바에 대한 협조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일곱. 나는 회사의 정보보호와 관련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행정기관의 관련고시를 준수하며, 유해한 웹 사이트, 불법 소프트웨어 등으로부터 회사의 정보시스템을 보호하겠습니다.

202 년 월 일

소속 :

사번 :

성명 :

(서명 또는 인)